#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 발의연월일: 2024. 6. 3.

발 의 자:김한규·한준호·문정복

민병덕 · 윤호중 · 장철민

김종민 · 문대림 · 백혜련

김태년 · 강준현 · 김성환

최기상・김 현・박희승

위성곤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본원은 광주에 두고 분원은 제주에 설치되어 2024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

그런데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국립으로 설치·운영됨에도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의 각 치유대상자들이 겪은 사건의 성격이 달라 별도의 독립된 치유센터로 운영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치유센터를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및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 및 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광주 및 제주지역 치유대상자의 우려를 해소하고치유센터의 내실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제5항 신설 등).

#### 법률 제 호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치유센터는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및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다.
- ⑤ 지역별 치유센터의 설립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설립) ① ~ ③ (생 략)	제5조(설립) ① ~ ③ (현행과 같
	<u></u> 수
<u>&lt;신 설&gt;</u>	④ 치유센터는 치유대상자의
	수, 이용 편의성 및 공동체 트
	라우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
	여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다.
<u>&lt;신 설&gt;</u>	⑤ 지역별 치유센터의 설립 요
	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u>국가와</u>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u>국가</u>
<u>지방자치단체</u> 는 치유센터의 설	
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	
조할 수 있다.	